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참조3)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514
----------	------

발의년월일 : 2011. 5.

발 의 자 : 박창순 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우리시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시 개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질을 제고시키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확대와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등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4조제3항)
- 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함.(안 제4조제4항)
- 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함.

(안 제6조제1항)

- 라.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여행자 각 개인별로 작성 보고(안 제9조제1항)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허가권자는”을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으로 하며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 내용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6조 중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마친 의원은”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각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u>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u>허가권자는</u> 성남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u>심사위원회</u>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 <u><신 설></u> <u><신 설></u> ③ (생략) ④ <u>제3항</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u>심사위원회의</u>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③ (생략) 제9조(여행보고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u>마친</u> 의원은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u>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u>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u> -----. ② <u>심사위원회</u>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u>제5항</u>의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여행보고서의 제출) ① ----- <u>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은 각각</u> -----.

參 考 資 料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563(2009.03.11)호와 관련

-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임
-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과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람

1. 큰 거

-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음.

2. 기본 방향

-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 시 고려

3. 권고 사항

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강화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 확대(1/3→과반수)
 -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과반수→2/3찬성)
-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2]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 시 고려사항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현장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억제
 -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 억제
- 여행인원은 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부여

<방문국(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필요 이상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추가방문 자제
- 방문기관의 사정·공휴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임기 중 특정시기 방문은 지양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고, 소요경비는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지급

[3] 여행의 사후관리

- 공무국외여행 후, 15일 이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 홈페이지 게시 등 공동 활용
 -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2001. 02. 19 의회규칙 제0010호)

개정(2002. 12. 27 의회규칙 제0011호)

개정(2007. 12. 03 의회규칙 제002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대표 2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

③심사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 및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 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목적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 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 시기를 선택하 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예산 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성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여행계획서의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접수한 의장은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여행보고서의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의원은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의회 자료실에 비치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1.02.19 의회규칙제0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7 의회규칙제0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3 의회규칙제0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